#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6노768 판결 모욕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건 2016노768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은수(기소), 박혜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3. 18. 선고 2015고단2726 판결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1) 2015. 7. 7.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피해자는 이사건 공소제기 전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2015. 8. 16. 모욕 및 2015. 8. 26.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는 경비원 1인만이 있어 전파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 아파트 705동 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 회장인 사람, 피해자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계·전기 기사이다.

#### 가) 2015. 7. 7. 모욕

피고인은 2015. 7. 7. 21:5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직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라고 말을 하였다고 오인하고는, 피해자와 다른 관리실 직원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병신 같은 새끼, 임마 병신아, 쪼다 같은 새끼, 에이 병신, 야 경찰 부르면 내가 두려울 줄 아냐, 병신아, 해보자이 자식아, 이런 개싸가지 없는 새끼가"라고 하여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나) 2015. 8. 16. 모욕

피고인은 2015. 8. 16. 18: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위 아파트 경비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인격이 문제지, 병신 육갑 떨고 있지 마, 야 쪼다야, 너는 개보다도 못한, 니도 아들이라고 니 엄마가 태어날 때, 너 엄마가 미역국 먹었겠지, 사람이 인성교육이 안되가지고, 똑바로 살아 임마, 집 쌀 준비나 해라."라고 하여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다) 2015. 8. 26. 모욕

피고인은 2015. 8. 26. 위 아파트 정문 초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위 아파트 경비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조심해서, 너 같은 나이 먹으면 헛쳐 먹은, 니 아들 결혼 전에 개망신 당할 거야, 좆 까라, 새끼야, 너는 좆이라도 있냐? 새끼야, 비굴한 새끼, 비참한 새끼, 천한 놈아."라고 하여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2) 판단

### 가) 2015. 7. 7.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는 2015. 7. 10.경 "2015. 7. 7.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의고소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2015. 7. 14.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손으로 목 부위를 쳐 넘어뜨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고소하였을 뿐 2015. 7.7.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고소장이나 진술조서에 아무런 기재 내지 진술이 없었던 점, 2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한 파주경찰서는 제2015-008063호 상해 사건으로 수사를 개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피고인, 참고인 등을 조사하였던 점, 3피고인은 이에 맞서 2015. 7. 17.경 "피해자가 2015. 7. 5.경 피고인

을 'D'라고 부르는 등 모욕하였다"는 고소사실로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이후 2015. 7. 22.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조건 없이 쌍방 고소한 것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각서에도 2015. 7. 7.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던 점, 4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건을 이송받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직무대리 M은'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가 고소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상해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던 점, 5 피해자는 2015. 8. 31.경 2015. 7. 7. 모욕의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여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2015. 7. 7.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가사 피해자가 2015. 7. 7. 모욕의 점까지도 포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15. 7. 22.자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각서 작성 이전에 2015. 7. 7.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고소의 취소가 인정될 수 없고, 고소권의 포기도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2015. 8. 31.자 이 사건 고소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5. 8. 16. 모욕 및 2015. 8. 26. 모욕의 점의 관한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I,J은 피해자가 기계·전기 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피해자와 친인척관계라거나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2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할 당시의 상황, 동기 및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I. J이 이를 타인에게 발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기대할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3 특히 I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D'라고 부르는 등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의 주장이 달라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J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였다고 하더라도 1, J이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점,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발언 내용과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은택(재판장) 김성래 이준구